



### 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나.라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마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
## 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 (2010/7/23 개정, 8/9 시행)\*

### 1) 개정목적

- 현행 금융투자분석사(이하 '애널리스트')의 인적정보 및 조사분석자료(이하 '리포트') 등 일반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졌던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체계의 개선

### 2) 개정내용

####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관련 정보 공시

##### —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

- 금융투자협회가 보유중인 전문인력 DB를 활용,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
- 공시항목: 성명, 협회등록번호, 현소속증권사명, 근무경력(총경력, 회사별근무기간), 증권사별 애널리스트 현황(총인원수) 등

##### — 리포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

- 개별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리포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
- 공시항목: 제목, 분석대상회사명, 작성애널리스트성명, 리포트공표일자, 주요 내용(투자의견, 목표주가 등), 원문 사본

\*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2010년 7월 23일 공지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 주요 내용 및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됨



—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시스템 간 상호 연결

- 금융투자협회 애널리스트 공시시스템과 개별 증권회사 리포트 공시시스템의 연계로 투자자 편의성 제고

**나.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(2010/8/3 개정, 8/9 시행)\***

**1) 개정목적**

- 펀드매니저에 대한 공시 강화 및 펀드별 책임매니저 정보의 추가로 펀드매니저 공시 정보의 효용성 제고

**2) 개정내용**

- 펀드별 투자운용 인력정보 추가 (세칙 <별지 제8호>)
  - 제1호 서식 운용전문인력정보: 책임매니저 여부(Y/N) 추가

**다.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(2010/7/30 개정, 7/30 시행, 제40-1조 및 제40-3조의 개정규정은 8/30 시행)\*\***

**1) 개정목적**

- 2010년 1월 25일 도입된 펀드판매회사 변경제도 2단계 시행에 따른 대상펀드 확대 및 고객의 변경절차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제외 펀드 및 변경절차 조문 개정

---

\*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2010년 8월 3일 공지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주요 내용 및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작성됨

\*\*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2010년 7월 30일 공지한 「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주요 내용 및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작성됨



## 2) 개정내용

### □ 판매사 변경대상 적용펀드 확대 (세칙 제41-1조 제6호)

- 1단계 시행 시 제외되었던 온라인전용펀드(e-class), 온라인 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펀드 등 온라인 판매 펀드를 변경제도에 포함시킴

### □ 판매회사 변경절차 개선 (세칙 제40-3조 제1호, 제2호)

- 판매사 변경을 위한 이수판매사 계좌확인서접수를 지점방문 및 온라인 상 모두 가능토록 판매사변경신청 절차 개선

## 라.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(2010/7/1 개정, 7/1 시행)\*

### 1) 개정목적

- 2010년 6월 1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 중 채권형펀드 분류기준 부분의 개정

### 2) 개정내용

#### □ 채권형펀드 분류기준 일부 개정 (세칙 <별지 제15호>)

- 집합투자기구 분류 > 집합투자기구 종류 > 채권형(MMF제외): 문구 추가
  -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. 다만, 증권집합투자기구가 100분의 60이상을 국채, 통안채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

\*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2010년 7월 1일 공지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주요 내용 및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작성됨



마. 「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」 개정 (2010/7/23 개정, 7/23 시행)\*

1) 개정목적

- 응시자의 연령대 하락 및 군인, 외국국적자 등의 응시자 증가에 따라 인정 신분증의 미소지로 인한 자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민원 증가

2) 개정내용

- 초·중·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, 학생증, 청소년증 및 신분확인증명서, 군인의 경우 장교·부사관신분증, 군복무확인서 및 신분확인서,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, 재외국민내거소신고증 등을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추가
  -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
    - 이 경우, 신분증, 증명서에는 사진이 부착되고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

선임연구원 이진호 (02-3771-0677, leejinho@kcmi.re.kr)

---

\*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2010년 7월 23일 공지한 「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」 개정 주요 내용 및 개정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됨